## 변경 대비표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다이나믹코리아50 연금저축 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]

□ 변경 사항: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변경

□ 효력발생일: 2024. 8. 29.

□ 변경 내용						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			
요약정보			_			
집합투자기구의 종류	금융투자회사의 영업	온라인슈퍼(S) : <u>집합투자증</u>	온라인슈퍼(S) : <b>자산운용사</b>			
	및 업무에 관한 규정	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	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			
	시행세칙 변경	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	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			
		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	래스(S-T 및 S-P클래스 포			
		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	함)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			
		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	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			
		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	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			
		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	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			
		<u>구입니다.</u> 다만, 판매회사로	로서 다른 클래스[가입 자격			
		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	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			
		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	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]			
		다.	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후취			
			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			
			<b>투자기구입니다.</b> 다만, 판매			
			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			
			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			
			않습니다.			
		개인연금(S-P) : 소득세법	개인연금(S-P) : 소득세법			
		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	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			
			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"연			
		금저축계좌"의 가입자 중 <u>집</u>	금저축계좌"의 가입자 중 자			
		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	<u>산운용</u> 사의 공동판매채널로			
		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	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			
		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	<u>공모 S 클래스(S-T 및 S-P</u>			
			클래스 포함)를 취급하고,			
		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	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			

			용으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	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
			지 않는 집합투자기구입니	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
			다.	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
				[가입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
				자 등)에 제한이 있는 클래
				스 제외]보다 판매보수가 낮
				<b>고</b> 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
				않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
제 2 부 집합투자기구(	에 관한 사항			
6.집합투자기구의 구	금융투자회사의	영업	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	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
조	및 업무에 관한	규정	개인연금(S-P) : 소득세법	개인연금(S-P) : 소득세법
나. 종류형 구조	시행세칙 변경		제20조의3및 소득세법시행	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
			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"연	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"연
			금저축계좌"의 가입자 중 <u>집</u>	금저축계좌"의 가입자 중 <u>자</u>
			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	산 <del>운용</del> 사의 공동판매채널로
			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	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
			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	<u>공모 S 클래스(S-T 및 S-P</u>
			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	클래스 포함)를 취급하고,
			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	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
			용으로서 판매수수료가 징구	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
			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	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
			하고자하는 투자자	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
				[가입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
				자 등)에 제한이 있는 클래
				스 제외]보다 판매보수가 낮
				<u>고,</u>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
				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
				하는 투자자
6.집합투자기구의 구	금융투자회사의	영업	온라인슈퍼(S) : <u>집합투자증</u>	온라인슈퍼(S) : <b>자산운용사</b>
조	및 업무에 관한	규정	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	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
다. 집합투자기구의	시행세칙 변경		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	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
종류 및 각 종류별				래스(S-T 및 S-P클래스 포
특징				함)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
				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
				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
			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	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

다.

구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 **□로서 다른 클래스[가입 자격** 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 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]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후취 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 **투자기구입니다.** 다만, 판매 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

개인연금(S-P) : 소득세법 | 개인연금(S-P) :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 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"연 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"연 금저축계좌"의 가입자 중<u>집</u>|금저축계좌"의 가입자 중<u>자</u> 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 산**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** 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 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공모 S 클래스(S-T 및 S-P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클래스 포함)를 취급하고,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 용으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 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 지 않는 집합투자기구입니 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 다.

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 [가입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 자 등)에 제한이 있는 클래 스 제외]보다 판매보수가 낮 고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

11. 매입, 환매, 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2) 가입자격 적용기준 가. 매입

시행세칙 변경

환절차 및 기준가격 및 업무에 관한 규정 | ③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 | ③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 -개인연금(S-P) :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 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"연 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"연 금저축계좌"의 가입자 중집 금저축계좌"의 가입자 중자 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 **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** 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 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공모 S 클래스(S-T 및 S-P

2) 가입자격

-개인연금(S-P) : 소<del>득</del>세법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글래스 포함)를 취급하고,

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 <b>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</b>
용으로서 판매수수료가 징구 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리
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 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
하고자 하는 투자자 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
[가입자격(기관 및 고액거리
자 등)에 제한이 있는 클리
스 제외]보다 판매보수가 낮
<u>고,</u>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
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지
하는 투자자